##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1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 박성훈·이헌승·한지아

구자근 • 고동진 • 서지영

송석준 • 백종헌 • 김위상

박충권 • 곽규택 의원

(11인)

### 제안이유

2024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신설).
- 나.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 다.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 라.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6 신설).
- 마.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시 비용 지원이 가 능함을 고려하여, 행정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도록함(안 제18조제2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한다.

- ④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제1항 중 "민간"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 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대학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등이 직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6(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

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
자 고용 지원) ① ~ ③ (생 략)	자 고용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체
	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
	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
	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다.
<u>④</u>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의</u> 규	⑤ <u>제4항까지의</u> -
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	
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	
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b>.</b>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	
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	
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u>민간</u>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신<u>설></u>

<신 설>

-----<u>전문성을 갖춘</u>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
  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공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6(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 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 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 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생략)

- 는 기업(이하 "청년친화강소기 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 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사 업장 단위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현행과 같음)